IPARK 고척 아이파크 임차인 모집공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00-7번지 일원
■ 시 행 사 : ㈜고척아이파크 대한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공급대상 : 64~79㎡이하 임대주택 1,459호
■ 시공사 : HDC현대산업개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사항
고척 아이파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예약방문관람(사전예약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사항은 홈페이지 참조)과 사이버 견본주택 (http://hdc-i-park.com/gocheok/)으로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당사의 방역운영 방안을 준수하여야만 견본주택 방문관람이 가능하오니 내방시 아래 준수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관람에 제한 및 방문관람시간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전 체온 체크 시(열 화상 카메라, 비접촉체온계)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체온측정 등 예방 절차에 불참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방지 및 방문 장체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고객 아이파크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 전화☎(02) 862-2205)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합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자 청고자료로 확정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빠짐없이 직접 확인하기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택공급내역

■ 「인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 0001호(2020.11.24.)로 임차인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00-7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3층~지상최고 45층 6개동 1,459세대(특별공급 29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전용면적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입주예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 공급	일반 공급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청년	신혼	고령자				
64㎡	64A	64.8900	22.7751	87.6651	41.3994	129.0645	18	66	5	–	–	89
	64B	64.8900	22.7751	87.6651	41.3994	129.0645	–	–	–	40	152	192
	64C	64.9300	22.7751	87.7051	41.4249	129.1300	4	20	3	20	300	347
	64D	64.9300	22.4552	87.3852	41.4249	128.8101	9	29	2	–	49	89
	64E	64.9300	22.4552	87.3852	41.4249	128.8101	–	–	–	–	89	148
	64F	64.9300	21.9903	86.9403	41.4377	128.3780	–	–	–	–	21	21
	64G	64.9300	22.2152	87.1452	41.4249	128.5701	–	–	–	–	20	20
	64H	64.7800	22.5577	87.3377	41.3292	128.6669	–	–	–	–	73	73
	64H	64.9500	22.7603	87.7103	41.4377	129.1480	7	26	2	–	–	35
	64I	64.9500	22.7603	87.7103	41.4377	129.1480	–	–	–	32	67	99
79㎡	79A	79.9200	26.5503	106.4703	50.9884	157.4587	15	57	5	–	–	77
	79B	79.9200	26.5503	106.4703	50.9884	157.4587	–	–	–	36	136	172
	79C	79.9300	26.7529	106.6829	50.9948	157.6777	8	28	2	–	–	38
	79D	79.9300	26.7529	106.6829	50.9948	157.6777	–	–	–	78	140	218
	79E	79.9300	26.3429	106.2729	50.9948	157.2677	–	–	–	–	4	4
	79F	79.8900	27.5927	107.4827	50.9692	158.4519	3	13	2	–	–	18
	79G	79.8900	27.5927	107.4827	50.9692	158.4519	–	–	–	17	68	85
	79H	79.8900	27.5927	107.4827	50.9692	158.4519	–	–	–	–	35	35
	79I	79.7500	27.7671	107.5171	50.8799	158.3970	–	–	–	–	6	6
합계							60	219	18	292	870	1,459

- 우선공급 유형은 「인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1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구로구 거주자를 우선공급 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은 청약 신청시 당사 홈페이지(http://hdc-i-park.com/gocheok/)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사업주체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타입 기준 (64A/64B/64C/64D/64E/64F/64G/64H/64I/79A/79B/79C/79D/79E/79F/79G/79H/79I)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 타입(64A/64B), (64C/64D), (64H/64I), (79A/79B), (79C/79D), (79F/G)은 공급 유형(특별/우선/일반)을 나누기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 동일한 주택임을 알려드립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TYPE 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TYPE 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 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청약을 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상의 절차, 실측청산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부터 견본주택 철거 전까지 청약신청자 및 청약자 중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 관람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 기간 개시일 및 기간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후라도 변경 시 입주자 개별통지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통지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인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 중 200만원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선무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 및 명의변경
- 계약 체결 시 계약자의 명의 변경은 불가하나, 입주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을 기준 임차인이 포함된 복수의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는 임차인의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부모로 한정하며, 이 주택의 다른 세대의 계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자 전부는 관계증명상 임차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의 임차인은 어떠한 사유라도 공동명의자 중 1인을 단독명의로 하는 변경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이 주택은 각 공급유형(특별/일반/우선)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입대주택의 경도 및 퇴거 기준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유지하세요)이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인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7에 따라 주택소유 기준 완화되어 임차인 제외 이후 주택소유 기준 완화되어 임차인 제외 이후 주택소유 기준 완화되어 임차인 제외 이후